

『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부여된 <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권>을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(안 제4조)
- 의견제출 방법,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(안 제5조~제6조)
-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(안 제7조~제8조)
-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위임한 <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>과 관련하여, 의견제출 및 결과통보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신설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